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 허용(안 제3조 단서)

- 제3조 제2항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삭제

나.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시설의 허용범위를 정하여

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(안 제3조 제2항 제19호)

-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중에서 숲속의 집, 치유센터, 유아숲체험원,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4호, 제16호 및 제19호”를 “제14호 및 제16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시설은 제외한다.

제3조제2항제19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산림치유시설 중에서 숲속의 집, 치유센터,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

나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편익시설 중에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) ① (생략)	제3조(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14호, 제16호 및 제19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(이하 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에 적용하지 않으며,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,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제14호 및 제16호 <u>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8. (생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
19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<단서 신설>	19. -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<u>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시설은 제외한</u>

<신 설>

<신 설>

③ · ④ (생략)

다.

가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1
호가목에 따른 산림치유시
설 중에서 숲속의 집, 치유
센터, 「산림교육의 활성
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
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

나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편익시설 중에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46